

이 사 회 의 사 록

회 의 일 시 : 2018년 07월 04일 16시

회 의 장 소 : 법인 2층 회의실

이 사 정 수 : 7명

재 적 이 사 : 7명

출 석 이 사 : 5명(박창균, 백남해, 권기덕, 이명자, 정규식)

대표이사 박창균은 위와 같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전차 회의록 낭독에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권기덕 이사가 사임하고자 하여 후임이사 이사로 이흥우, 신임 이사로 서영옥의 선임을 논의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임하다.

이사 이흥우 이사 서영옥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다수의 조문에서 정관변경이 필요하고, 천사의집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로 인한 자산총액이 3,638,212,395원에서 86,089,999원 증가하여 3,724,302,394원이 되었기에 정관 변경에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제5조(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1'과 같다. ④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 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상임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8인(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이상은 추천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이사를 임면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 규정에 의한 시·도 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5조(이사회회의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법인의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의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인감날인 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기본재산) 임대 사업 2. 그 밖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수익사업 ②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3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상근임직원) ①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8조(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실는다. ②제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호 의안 산하시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영보직업재활센터, 천사의집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승인한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

(단위:천원)

시설명	세입			세출			비고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83,010	109,237	26,227	83,010	109,237	26,227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338,330	362,300	23,970	338,330	362,300	23,970	
영보직업재활센터	451,594	477,595	26,001	451,594	477,595	26,001	
천사의집	2,053,691	2,026,099	-27,592	2,053,691	2,026,099	-27,592	

제4호 의안 법인 후원.봉사회 조직의 건

상임이사가 자료를 토대로 법인 내 카리타스 후원.봉사회 조직을 건의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조직 구성을 결의한다.

제5호 의안 교구 재단법인의 설치 시설 수증 추진의 건

상임이사가 교구 재단법인의 설치 시설 수증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수증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한다.

(회의 종료 시간 : 16시57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아래에 날인하다.

2018년 07월 04일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박 창



이 사 백 남



이 사 권 기



이 사 이 명



이 사 정 규



감 사 노 미

